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6가단5124606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한국철도공사

피고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2018. 4. 11.

판결 선고2018.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61,551원 및 그 중 519,519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8. 5. 9.까지는 연 3.62%의, 25,542,032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8. 5. 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61,551원 및 그 중 519,519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62%의, 25,542,032원에 대하여는 2016.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8. 소외 주식회사 엔씨트라움(이하 '엔씨트라움'이라 한다)과 '경부선 금천구청역 홈지붕 개량 기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0,280,210원, 계약보증금 25,542,032원, 착공년월일 2015. 6. 16., 준공년월일 2015. 11. 12.로 하는 공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엔씨트라움은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25,542,032원, 보증기간 2015. 6. 8.부터 2015. 11. 12.까지(특기사항 :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실제 준공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함)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6. 11.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엔씨트라움에게 2015. 7. 14. 선금으로 31,6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엔씨트라움은 피고와 보증금액 32,193,000원, 보증기간 2015. 7. 6.부터 2016. 1.

11.까지(특기사항 :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3.6%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정이자는 가산한 약정이자의 범위내에서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 개시 전에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로 정한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7. 6.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공사 중단과 도급계약 해지 및 원고와 엔씨트라움 사이의 공사와 관련한 소송

1) 엔씨트라움이 이 사건 공사진행 도중 도면과 다른 시공을 하여 2015. 8. 5. 공사가 중지된 후 여러 차례 설계변경 및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엔씨트라움은 2015. 9. 17.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원고는 일부 변경도면을 제공하고 계약금액의 할증을

제시하며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엔씨트라움은 선시공된 비용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변경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실비정산을 요구하면서 2015. 11. 9. 정산검사원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엔씨트라움에 계약해지를 위한 정산을 위해 현장실사 및 자료를 요구하였고, 타절금액에 이견이 있어 결국 원고가 단독으로 실사한 결과에 따라 2015. 12.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 7. 피고에게 엔씨트라움의 기성고 타절금액을 27,792,925원으로 계산한 후 계약보증금 및 선금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엔씨트라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12.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6가단5293496), 위 법원은 2017. 11. 16.

엔씨트라움의 기성공사금액을 31,080,481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지급한 선금 31,600,000원을 공제하면 남아있는 공사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엔씨트라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 28, 29, 32호증, 을 3내지 10, 을 제19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선금금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계약보증금지급의무

갑29호증, 을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 약관 제1조 및 제3조는 피고는 엔씨트라움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물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8조 제1항에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25,542,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금금보증금 지급의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9호증, 을제19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엔씨트라움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선금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고, 그 보증금은 선금금지급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엔씨트라움이 반환해야 할 선금해당액 중 미지급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에서는 '계약상대자(엔씨트라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원고)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엔씨트라움이 2015. 12. 31.까지 진행한 공사의 기성금액은 31,080,481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당시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연 3.62%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선금금 519,5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증가된 공사비용에 대한 원고와 엔씨트라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엔씨트라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설계변경과 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안을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엔씨트라움은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5,542,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5.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급금보증금으로서 519,519원(기지급 선급금 31,600,000원 - 기성금액 31,080,481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2) 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5. 9.까지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인 연 3.6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지현

- 1) 원고는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9조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받고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이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16. 1. 7.을 기준으로, 보증금 결정 후 지급 기한인 7일과, 그 이전에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결정에 필요한 기한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7일 합계 14일을 더한 2016. 1. 21.이 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6.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원고는 선급금보증금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선급금보증약관 제8조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받고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이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계약보증금의 지급시기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2016. 1. 7.을 기준으로, 보증금 결정 후 지급 기한인 7일과, 그 이전에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결정에 필요한 기한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7일 합계 14일을 더한 2016. 1. 21.이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6.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